인천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

2010. 4. 12(월)
산 업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0. 3. 23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0. 3. 23

라. 상정일자 : 2010. 4. 5(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항만공항물류국장

○ 검토보고 : 산업전문위원 김복기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정이유

❍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,

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으로 시·도지사에게 권한이양 되었던 사무가 국토해양부장관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. (안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1대의 용달화물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,
- 부칙으로 시장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무 중 일부업무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「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○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,

- **영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하여서는**
  - ·지난 2008. 10. 21일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
  - ·조례를 제정하여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.
- **부칙의「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」폐지와 관련하여서는**
  - ·지난 2004.1.20일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일부개정으로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(시·도지사)에서 허가제(국토해양부장관)로 전환되는 등 시·도(지사)의 권한이었던 사무 중 일부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관되면서,
  - ·「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시장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였던 업무가 국토해양부장관 사무가 됨에 따라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바,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　의 >

○ 한도섭 위원장

- 부칙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가 법 개정 후 6년이나 지난 사유는?

○ 강창규, 김을태 위원

- 주거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가 큰 문제이며,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
< 답　변 >

○ 항만공항물류국장 조영하

- 2004년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즉시 조례를 폐지하지 못하여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.
-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를 개선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한도섭, 박희경, 강창규, 김성숙, 김을태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5명)

7. 기타 특이사항

○ 없 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면제대상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